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정보시스템 장애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3명(5급 3명)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정원 4명(5급 4명)을 각각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며, 고용노동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고용정책실 1개 정책관, 통합고용정책국 1개 과 및 기획조정실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취업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0명(7급 11명, 8급 15명, 9급 14명) 중 20명(7급 6명, 8급 7명, 9급 7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며, 20명(7급 5명, 8급 8명, 9급 7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99명(6급 89명, 7급 150명, 8급 60명) 및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

가대상 정원 114명(6급 34명, 7급 58명, 8급 22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정원 62명(6급 15명, 7급 19명, 8급 13명, 9급 15명)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06. ~ 1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노동정책실에 두는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중 총계 “628”을 “623”으로, 일반직 계 “622”를 “617”로, 3급 또는 4급 이하 “598”을 “59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590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3”를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7,136”을 “7,051”로, 일반직 계 “7,135”를 “7,070”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7,106”을 “7,01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7,017 다음에 “전문직공무원 4”를 신설한다.

별표 4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직	정원
1) 산업안전보건본부	1명
2) 산업안전보건본부 1개 정책관 등	1명
3) 산업안전보건본부 4개 과	23명
4) 노동정책실 1개 과	5명

별표 4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업무	정원
1) 취업지원 서비스(지방고용노동관서)	65명
2)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68명
3)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33명
4)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추진 (지방고용노동관서)	30명
5) 근로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21명
6) 고용센터 초기상담(지방고용노동관서)	22명
7)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106명
8)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운영 (지방고용노동관서)	68명
9) 산업안전감독(지방고용노동관서)	75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고용노동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정원 65명(6급 16명, 7급 21명, 8급 13명, 9급 1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장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노동정책실에 두는 노사협력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무처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

	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28</u>	<u>623</u>	-5
·	·	·	
·	·	·	
일반직 계	<u>622</u>	<u>617</u>	-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98</u>	<u>590</u>	-8
전문직공무원	<u><신 설></u>	<u>3</u>	+3
·	·	·	

[별표 3]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136</u>	<u>7,051</u>	-85
·	·	·	
·	·	·	
일반직 계	<u>7,135</u>	<u>7,070</u>	-85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7,106</u>	<u>7,017</u>	-89
전문직공무원	<u><신 설></u>	<u>4</u>	+4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2